

중소기업 기술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

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통합포털(www.ultari.go.kr) 참조



기술보호 상담 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-481-8954~5)

-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분야별(보안, 법률, 신고·수사 등) 전문가 상담·컨설팅
- 지원내용 : 전문상담 자문수당 지원(사전진단 1일 포함 최대 11일 이내 / 보안교육 1일 무료, 심화컨설팅 비용의 65% 지원)

기술자료 임치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02-368-8762~5)

-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협력기업간 안정적인 기술사용 보장 등을 위해 기술자료를 임치센터(대·중소기업협력재단)에 등록·보관(기술임치 이용수수료 : 신규 30만원/년, 갱신 15만원/년)
- 임치대상 : 특허권·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, 제조·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·경영상 정보
 - * 기술자료 임치물에 대해서는 '개발사실의 추정력' 부여(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제24조의3 제2항)

기술지킴이(보안관제) 서비스(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02-3489-7051~3)

- 중소기업기술지킴이센터를 통해 내부직원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 및 사이버 침해사고 방지
- 지원내용 : 기술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파악 등을 위한 사전점검, 네트워크, 시스템 장애 등에 대한 24시간×365일 실시간 모니터링, 침해사고 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응 보안 솔루션 지원 등

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(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-388-0318~9)

- 중소기업의 보안인프라에 대한 정밀진단 및 설계를 통해 기업환경에 적합한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
- 지원내용 : 네트워크, 서버 및 PC보안, 문서보안 등 기술적 대응 솔루션과 출입관리 등 물리적 대응 솔루션 구축(총 비용의 50% 한도, 4천만원 이내)

무료 변리서비스 및 특허심판·소송 지원

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(www.pcc.or.kr / 02-6006-4300) 참조



- 지원대상 : 중소기업(단, 중기업은 서류작성 지원 제외) 등
- 지원내용 :
 - (무료 변리서비스) 지재권 관련 상담, 명세서 등 출원·심사·심판 관련 서류작성 지원
 - (심판·소송 지원) 공익변리사의 심판·심결취소소송 대리 및 산업재산권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(최대 1천만원) 지원
- 지원근거 : 발명진흥법 제26조의2(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)

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현황

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신고부터 처리완료시까지 전담하는 신고기업 보호관을 지정하여 피해기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


지역	기관명	전화번호/팩스	주소
서울	서울지방 중소기업청	T. 02-2110-6343 F. 02-2110-0664	[427-700]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층
	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	T. 02-730-2493 F. 02-2100-4941	[110-300]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8 동덕빌딩 4층
	중소기업중앙회 (제조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)	T. 02-2124-3132 F. 02-780-2448	[150-740]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
	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(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)	T. 02-368-8444 F. 02-368-8479	[152-759]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7층
부산	부산지방 중소기업청	T. 051-601-5111 F. 051-338-5180	[46754]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(송정동)
울산	울산지방 중소기업청	T. 052-210-0011 F. 052-283-0354	[44248]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재 3층
대구 경북	대구·경북지방 중소기업청	T. 053-659-2262 F. 053-654-1714	[704-833]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-11
광주 전남	광주·전남지방 중소기업청	T. 062-360-9136 F. 062-366-9662	[502-200] 광주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
경기	경기지방 중소기업청	T. 031-201-6957 F. 031-201-6959	[443-761]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
인천	인천지방 중소기업청	T. 032-450-1142 F. 032-818-0206	[405-849]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
대전 충남	대전·충남지방 중소기업청	T. 042-865-6109 F. 042-865-6139	[305-343]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
강원	강원지방 중소기업청	T. 033-260-1624 F. 033-260-1629	[200-944]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
충북	충북지방 중소기업청	T. 043-230-5323 F. 043-235-2492	[363-883]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
전북	전북지방 중소기업청	T. 063-210-6464 F. 063-210-6460	[560-860]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
경남	경남지방 중소기업청	T. 055-268-2561 F. 055-262-5560	[641-060]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



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 민원참여 - 민원신고 - 불공정거래신고(국민신문고)
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홈페이지(www.win-win.or.kr) 사업안내 - 대·중소기업 협력증진 - 수·위탁분쟁조정
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(www.kbiz.or.kr) 지원센터 - 제조 하도급 분쟁조정

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안내

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와드립니다.

www.smba.go.kr



중소기업청



대·중소기업협력재단

KBIZ 중소기업중앙회
Korea Federation of SMEs

신고센터안내

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주요 역할

- 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상담·신고·안내
- 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조정 상담·안내
-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및 분쟁조정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법률자문 지원
-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·안내 및 피해 구제 안내

불공정거래 행위 피해 예방 TIP

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배포하는 표준약관서(또는 표준하도급계약서)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.

- ↳ 중기청 표준약관서 : 중기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 - 민원참여 - 민원신고 - 불공정거래신고 - 표준약관서 다운로드
- ↳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: 공정위 홈페이지(www.ftc.go.kr) - 정보공개 - 표준계약서 - 표준하도급계약서

불공정거래신고센터 상담 등 지원절차

-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서 기업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상담 후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피해 구제방법 모색
 - ※ 수탁·위탁, 징벌적 손해배상, 의무고발요청 등 제도 및 분쟁조정 안내, 범위반 행위 상담 및 피해 구제방법 등 모색(법률자문 지원 등)
- 특히, 수탁·위탁거래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사실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분쟁조정



상담
(전화, 우편, 방문 등)

※ 중소기업 상담내용에 따라 상기 지원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



신고 또는
분쟁조정 접수



피해사실
확인 및 조사



위반기업 시정조치
또는 분쟁조정

불공정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법률상담·자문 지원

-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 (www.win-win.or.kr / 1670-0808)
 - ※ 불공정피해 관련 전담 변호사 상담 및 안내
 - ※ 피해내용 범위반 여부 및 법적 구제방법 제시, 수·위탁분쟁조정사항 검토,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여부 등 전문변호사 무료 법률 자문 지원(1백만원 이내)
-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(www.1357.go.kr / 1357)
 - ※ 매주 월요일을 '법률상담의 날'로 지정하고 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무료 법률상담(변호사, 법무사) 및 현장으로 해결(현장클리닉) 지원
- 법무부 9988중소기업법률지원단 (www.9988law.com / 02-3418-9988)
 - ※ 무료 법률상담(온라인, 전화) 및 현장으로 해결(현장클리닉) 지원

수탁·위탁 분쟁조정 지원

-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(www.win-win.or.kr / 02-368-8444)
 - ※ 수탁·위탁거래 기업 간 분쟁발생 시 협상력과 법률적 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분쟁조정 지원을 통해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 해결방안 제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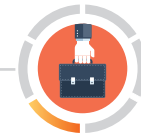
사전조정요청
(신청서제출)



내용검토
(의견청취 및
법률자문)



현장조사
(필요시)



자율조정 권고
(출석요구)



수위탁분쟁
조정협의회 상정
(조정안 마련)



조정권고
(조정완료)

징벌적(3배) 손해배상 적용대상 피해 상담·지원

-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35조(손해배상 책임)에 규정된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,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(단, 법 제35조에 규정된 5개 위반행위에 한함)
 - ※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반행위 :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(법 제4조), 부당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등(법 제8조①) 부당반품(법 제10조), 부당 감액(법 제11조①②), 기술자료 유용(법 제12조의3③)
- 중소기업청에서는 공정위(또는 법원)로부터 원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심결(또는 판결)을 받은 기업에 대해 법률자문 및 소송, 피해를 지원



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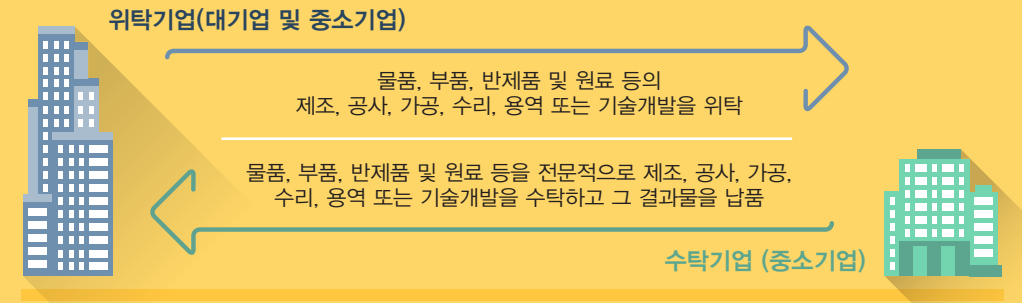
구분	세부 지원내용	
법률자문	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유무, 민사소송요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 (피해발생 즉시 지원 가능) ※ 문의 :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www.win-win.or.kr, 02-368-8797)	
공익신고 보상금	공익침해행위(징벌적 손해배상 대상 위반행위)에 대한 신고·진정 및 수사의 단서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(단, 과징금, 벌금 등의 처분이 있는 경우) ※ 문의 :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 부패·공익신고	
소송지원	공정위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해당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시 신속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※ 문의 :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(044-200-4588)	
판로 지원	공공 시장	공공조달 시장 참여시 가점 부여(최대 3년/ 신인도 평가시 0.5~1.0점 가점) ※ 문의 : 중소기업청 공공구매관리과 (042-481-8918)
	민수 시장	(B2B) 대·중소기업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※ 문의 : 대·중소기업협력재단(www.win-win.or.kr, 02-368-8790) (B2C) 중기제품 전문매장 입점업체 평가시 가점 ※ 문의 : 중소기업유통센터(www.win-win.or.kr, 02-6678-9342)
자금지원	긴급한 자금 소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· 대출한도 :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 ·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본금리에서 0.9p% 가산 ·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 ※ 문의 : 중소기업진흥공단(www.sbc.or.kr) 관할 본부	
정부사업 우대지원	수출역량 강화사업,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기업평가시 가점 ※ 문의 :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(www.exportcenter.go.kr)	



수탁·위탁거래란?

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판매, 용역을 업(業)으로 하는 자가 물품, 부품, 반제품(半製品) 및 원료 등(이하 '물품 등'이라 한다)의 제조, 공사, 가공, 수리, 용역 또는 기술개발(이하 '제조'라 한다)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,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합니다.

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



위탁기업 준수사항

- 관련법령 :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~제23조, 제25조①
- 위탁기업이 아래 법적 준수사항 위반시 법에 따라 불이익 부여(벌점부과, 명단공표, 공정위 조치요구)

구분	내용
서면교부 의무	· 약정서 및 물품수령증 서면 교부(법 제21조)
납품대금 지급 의무	· 지급기일(물품수령일로부터 60일) 이내 납품대금 지급 · 지급기일 초과시 지연이자(연 15.5%), 어음할인료, 어음대체수수료(연 7%) 지급 · 할인 불가능한 어음교부 금지(법 제22조/법 제25조①)
합리적 검사 의무	· 객관적,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 · 검사결과, 불합격 사유는 즉시 서면 통보(법 제23조/제25조①)
부당 대금 감액 등 금지	· 부당한 물품등의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 대금 결정 금지	· 동종, 유사물품의 통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추가대금 미증액 금지	·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 지급받았음에도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 강제구매 금지	·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 발주중단 등 금지	·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물량 감소 및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 대물변제 금지	· 납품대금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의 물품을 수령하도록 요구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내국신용장 개설 기피 금지	· 정당한 사유없이 내국신용장 개설을 기피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 발주 기피 금지	· 물품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 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	·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(법 제25조①)
불이익·보복조치 금지	· 기술자료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·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관계기관에 고지 이유로 발주물량 감소 및 거래중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(법 제25조①)

